

# 한·중 각국이 체결한 FTA협정의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Rules of Origin of FTA signed by Korea and China

김형철\*\* Hyoung-Cheol Kim  
김희철\*\*\* Hee-Cheol Kim  
라공우\*\*\*\* Kong-Woo La

### 목 차

I. 서론	IV. 결론 및 시사점
II. FTA 체결현황 및 원산지 규정	참고문헌
III. FTA 원산지 규정 분석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에서 동일하게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ASEAN이 동일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어 한·칠레, 한·ASEAN과 중국·칠레, 중국·ASEAN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추후의 체결하는 FTA 원산지 협상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주제어〉 FTA, 원산지 규정, 한중 FTA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박사, 제1저자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교신저자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공동저자

## I. 서론

2015년 한·중 FTA의 체결에 따른 발효가 이루어졌으며, FTA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 인 확대추세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FTA협정상의 특혜관세의 수혜 여부가 원산지가 어디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역내와 역외제품에 대한 차별대우가 결정되게 되며,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원산지 제도는 단순한 통관절차로서의 의미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와 생산방식 및 교역의 양상 등 전반적인 기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의 적극적인 추진과 참여는 무역을 핵심동력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체결된 FTA가 증가할수록 실제 무역의 주체인 수출입기업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FTA 적용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원산지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또는 체결된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이 FTA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한 원산지제도 활용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유광현·방성철, 2015).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관련 법제도 및 각국 정부가 이미 체결한 FTA에서 원산지에 대해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비교 연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체결이 14건으로 동일하게 체결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에서 동일하게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ASEAN이 동일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어 한·칠레, 한·ASEAN과 중국·칠레, 중국·ASEAN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원산지 분야에서 중국은 장기간 수출입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총서가 1986년 12월 6일 공포한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세관의 잠정규정」을 적용하여, 완전취득과 실질적 변경을 수입상품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2004년 9월 3일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를 공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전에 적용되던 원산지규정과 규칙은 동시에 폐지하였다(馬光, 2008). 그러나 중국·ASEAN FTA는 2004년 발효되었으며, 중국·칠레 FTA는 2005년에 발효 되었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 2004년, 한·ASEAN 2007년에 체결되어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두 나라가 각기 FTA를 체결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 원산지규정을 살펴본 후, 이미 체결된 FTA에서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각국 정부가 체결하는 FTA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규정의 일관적인 내용 및 새로운 진전방향 등을 찾아냄으로써, 추후의 체결하는 FTA 원산지 협상

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II. FTA 체결 현황 및 원산지 규정

### 1.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체결 현황

최근까지 전 세계에서 2015년 11월 기준으로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의 발효건수는 404건이다. 이러한 지역협정 중 상품무역을 다루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은 2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체결 현황

진행단계	한국	중국
	상대국	
발효	칠레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EFTA (4개국)	ASEAN
	ASEAN (10개국)	칠레
	인도	파키스탄
	EU (28개국)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페루
	터키	코스타리카
	호주	대만
	캐나다	아이슬랜드
	중국	스위스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호주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저자재구성(<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시기별로 살펴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였으며, 전체 404건의 협정 중 1995년 이후에만 354건으로 전체의 87.6%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2015).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는 14건이지만 체결국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EFTA, EU를 포함하고 있어 더 많은 나라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2.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 규정

FTA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원산지규정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FTA의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이 있으며, 일반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원칙과 분야별로 예외를 두어 판정하는 분야별 특례, 품목별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및 조합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2015). 또한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규정은 역외가공 허용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2〉 우리나라의 역외가공 허용여부

구분	역외가공 허용여부	주요내용
칠레	불인정	-
싱가포르	일부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의 경우 ISI 방식 4,625개 (HS 6단위) / OP (역외가공)방식 134개(HS 10단위)
EFTA	일부인정	품목의 제한 없이 적용하는 일반 역외가공과 특정 품목(267개) 역외가공 인정
ASEAN	일부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아세안 국가별 100품목
인도	일부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일부인정(HS 6단위 기준 의류제품 등 108개 품목)
EU	미정	협정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 가능성 존재
페루	일부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일부인정(HS 6단위 기준 의류제품 등 100개 품목)
미국	미정	협정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 가능성 존재
터키	미정	협정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 가능성 존재
호주	일부인정	협정 발효 6개월 이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 가능성 존재
콜롬비아	일부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일부인정(HS 6단위 기준 의류제품 등 100개 품목)
캐나다	불인정	-
뉴질랜드	미정	협정 발효 후 12개월 이내에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 가능성 존재
중국	일부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일부 인정(HS 6단위 기준 310개 품목-부속서 3-B 제1항 )
베트남	일부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일부인정(HS 6단위 기준 의류제품 등 100개 품목)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4&mainNum=030302](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4&mainNum=030302))

우리나라의 개성공단에 대한 인정여부가 중요하게 되며, 일부 인정하는 나라는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 호주,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의 FTA협정에서 역외가공 허용여부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역외산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세 번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 품목은 대부분

10%를 규정하고 있지만 칠레만이 8%를 규정하고 있다. 섬유부분은 8%부터 10%, 8-30% 까지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표 3〉 미소기준(최소 허용기준)

구분	가격기준		중량기준
	일반품목	농산물	섬유
칠레	8%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8%
싱가포르	10%	1~24류 적용제외/15~3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8%
EFTA	10%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0%
ASEAN	10%		10%
인도	10%	1~24류 적용제외/15~34류 세번변경시 적용가능	7%
EU	10%		8~30%
페루	10%	1~24류 적용제외/15~34류 세번변경시 적용가능	10%
미국	10%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7%
터키	10%		8~30%
콜롬비아	10%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0%
호주	10%	1~14류 적용제외	10%
캐나다	10%	1~21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0%
뉴질랜드	10%	1~14류 적용제외 (단순한 혼합을 초과하는 가공시 적용가능)	0% (50류에서 63류까지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 중량기준과 가격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중국	10%		10% (50류부터 63류에 규정된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 중량기준과 가격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베트남	10%		10% (50류에서 63류까지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 중량기준과 가격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저자 제작성.

([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4&mainNum=030302](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4&mainNum=030302))

대체가능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 또는 재료를 대체가능물품 이라고 한다. 대체가능물품 적용범위 협정별 비교하여 살펴보면 EFTA, ASEAN, 인도, EU, 터키, 중국의 협정에서는 재료만이 적용되고 있다.

〈표 4〉 대체기능물품 적용범위 협정별 비교

구분	적용범위
칠레	제품, 상품, 재료
싱가포르	제품, 상품, 재료
EFTA	재료
ASEAN	재료
인도	재료
EU	재료
페루	제품, 상품, 재료
미국	제품, 상품, 재료
터키	재료
콜롬비아	제품, 상품, 재료
호주	제품, 상품, 재료
캐나다	제품, 상품, 재료
뉴질랜드	제품, 상품, 재료
중국	재료
베트남	제품, 상품, 재료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저자 재작성.  
 ([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4&main-Num=030302](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4&main-Num=030302))

세트물품이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역외산 부품이 동 세트 가격의 일정수준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세트물품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 품목분류상 세트로 분류되면 그 세트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원산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각각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

〈표 5〉 세트물품 비교

구분	비원산지 상용허용	
칠레	규정없음	
싱가포르	규정없음	
EFTA	공장도 가격15%이하	
ASEAN	규정없음	
인도	규정없음	
EU	공장도 가격15%이하	
페루	총 가치의 15%이하	
미국	일반품목	조정 가치의 15%이하
	섬유류	관세 가치의 15%이하
터키	공장도 가격 15%이하	
콜롬비아	조정 가치의 15%이하	

한·중 각국이 체결한 FTA협정의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호주	규정없음
캐나다	공장도 가격15%이하
뉴질랜드	규정없음
중국	FOB 가격의 15%
베트남	규정없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저자 재작성.  
 ([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4&mainNum=030302](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4&mainNum=030302))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이들 간접재료비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제조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칠레, 호주, 뉴질랜드 FTA에서는 원산지 재료로 간주토록 하고 있어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 한하여 이들 간접재료비는 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하고 있다.

〈표 6〉 간접재료 협정별 비교

구분	상품의 원산지결정시 고려여부
칠레	원산지 재료 간주
싱가포르	제외
EFTA	제외
ASEAN	제외
인도	제외
EU	제외
페루	제외
미국	제외
터키	제외
콜롬비아	제외
호주	원산지 재료 간주
캐나다	제외
뉴질랜드	원산지 재료 간주
중국	제외
베트남	제외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저자 재작성.  
 ([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4&mainNum=030302](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4&mainNum=030302))

1)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는 본 상품과 같은 송품장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수량과 금액이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이면서 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그 부속품 등을 모두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2015). ASEAN, 캐나다, 베트남 FTA 협정에서는 품목에 관계없이 부속품 등을 제외하고 본체의 원산지 결정을 가장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칠레, 싱가포르, 미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중국과의 FTA 협정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비원산지 부속품 등의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각각의 원산지별로 재료비에 계상하고 있다. EFTA, EU, 터키의 FTA 협정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비원산지 부속품 등의 세번변경 여부를 고려하고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각각의 원산지별로 재료비에 계상한다.

## 2) 소매용 포장·용기

칠레, 싱가포르, 미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의 FTA 협정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소매용 포장·용기의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용기의 원산지별로 각각 계상한다(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2015). 그리고 EFTA, EU, 터키의 FTA 협정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소매용 포장·용기의 세번변경 여부 검토시 고려하고,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소매용 포장·용기의 원산지별로 각각 계상한다. 캐나다와의 FTA 협정에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공통으로 소매용 포장·용기는 상품의 원산지결정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

## 3) 원산지검증 방법

FTA 협정별 원산지의 검증(Verification)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은 검증의 주체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 (1) 직접검증

직접검증방식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계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칠레, 미국, 싱가포르, 페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협정 중 섬유 부분은 간접 또는 공동검증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2) 간접검증

간접검증방식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EFTA, EU, 터키, 베트남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 (3) 간접/직접 검증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이라고도 한다. 아세안, 인도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콜롬비아, 중국도 간접검증/직접검증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방문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표 7〉 협정별 검증제도 및 원산지증명 유효기간 비교

구분	검증 방식	조사 주체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칠레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2년
싱가포르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1년
EFTA	직접검증	수출국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1년
ASEAN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先수출국세관/後수입국세관	1년
인도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先수출국세관/後수입국세관	1년
EU	간접검증	수출국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1년
페루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1년
미국	직접검증(섬유/의류는 간접·공동검증)	수입국세관(섬유, 의류 수출국 세관)	4년
터키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	1년
콜롬비아	간접검증/직접검증	수입국세관	1년
호주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2년
캐나다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2년
뉴질랜드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2년
중국	간접검증/직접검증(방문검증)	수입국세관	1년
베트남	간접검증	수입국세관	1년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각 FTA 협정문, 저자 재구성.  
(<http://www.fta.go.kr/main/apply/fta/ptest/1/>)

## 2.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중국은 2003년부터 FTA 협상을 개시하여 2015년 현재 중국은 14건의 FTA 협정을 체결하여 발효하고 있다. 중국과 FTA 협정을 발효한 나라를 살펴보면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 아이슬랜드, 스위스, 한국, 호주가 협정을 발효하고 있다. 중국이 체결한 FTA의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세번변경기준을 주요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기준을 보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ASEAN,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는 협정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주요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을 보충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 대만의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에 보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 8〉 중국의 협정별 실질적 변경 및 부가가치기준

구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보충기준 적용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
홍콩	보충기준 적용	보충기준 적용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 30% 이상
마카오	보충기준 적용	보충기준 적용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 30% 이상
ASEAN	보충기준 적용	주요기준 적용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 40% 이상
칠레	보충기준 적용	주요기준 적용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 40% 이상
파키스탄	보충기준 적용	주요기준 적용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 40% 이상
뉴질랜드	주요기준 적용	보충기준 적용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 30%-50%
싱가포르	보충기준 적용	주요기준 적용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 40% 이상
페루	주요기준 적용	보충기준 적용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 40%-50%
코스타리카	주요기준 적용	보충기준 적용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 35%-60%
대만	보충기준 적용	보충기준 적용	-

자료 : 이상모(2012),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저자 재작성.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협정은 ASEAN,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가 적용이 되고 있다.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30~50%는 뉴질랜드, 페루가 적용이 되며,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 35~60% 코스타리카가 적용이 된다. 반면 홍콩과 마카오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 30% 이상인 경우 역내산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보충판정기준으로는 중립요소, 누적조항, 최소허용수준, 포장조항, 대체가능상품, 불인정공정, 부속품 등, 세트, 직접운송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 마카오, 대만은 원산지판정의 보충기준으로 중성성분 또는 간접재료, 누적조항, 미소함량, 포장조항, 대체가능한 제품 및 물품, 미소가공 또는 처리, 부속품, 예비품, 공구 등 10가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10여 가지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협정은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가 해당된다.

〈표 9〉 중국의 협정별 보충판정기준

구분	중립요소	누적조항	최소허용기준	포장조항	대체가능상품	불인정공정	부속 품등	세트	직접 운송
홍콩	적용	-	-	적용	-	적용	적용	-	적용
마카오	적용	-	-	적용	-	적용	적용	-	적용
ASEAN	적용	적용	-	적용	-	적용	적용	-	적용
칠레	적용	적용	8%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파키스탄	적용	적용	-	적용	-	적용	적용	-	적용
뉴질랜드	적용	적용	10%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적용
싱가포르	적용	적용	10%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적용
페루	적용	적용	10%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코스타리카	적용	적용	10%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자료 : 이상모(2012),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저자 재작성.

### 1)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중국과 칠레의 FTA 원산지 규정에서는 당해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예비부품·공구는 당해 상품 원산지 판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되지 않으며, 부속품·예비부품·공구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첫째, 부속품·예비부품·공구에 대한 송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않을 것, 둘째, 부속품·예비부품·공구의 양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 수준일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趙艷霞, 2009).

홍콩, 마카오 CEPA의 경우 상품과 함께 통관신고가 되고 수출입세칙에 의해 당해 상품과 함께 분류된 부품, 비품, 도구 및 소개 설명자료는 상품의 원산지를 확정함에 있어서 무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아세안과 파키스탄 FTA의 경우 상품과 함께 검사를 신청한 부품, 비품, 도구 및 지도적 이거나 또는 기타 소개 설명 자료는 수입 당사국 이 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원산지를 확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 FTA에서는 수입 시 상품과 함께 검사를 신청한 부품, 비품, 도구 및 설명서 또는 기타 정보자료가 당해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단독으로 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의 원산지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들 부품, 비품, 도구 등은 고려하지 말아야 하며, 싱가포르의 FTA는 상품과 함께 검사를 신청한 부품, 비품, 도구 및 지도성격이거나 기타 소개 설명 자료는 수입 당사국이 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상품의 원산지를 확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말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馬光, 2008).

## 2) 소매용 포장·용기

중국과 칠레의 FTA 원산지 규정에서는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된 소매 판매용 물품의 포장 재료와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된다면 그 자체의 원산지는 당해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 포장용 재료와 용기는 부가가치 판정기준에 적용할 때, 그 자체의 가치가 고려된다(조엽하, 2009). 홍콩, 마카오 CEPA의 경우 상품의 원산지를 확정함에 있어서 상품과 함께 통관신고가 되고 수출입세칙에 의해 당해 상품과 함께 분류된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아세안과 파키스탄 FTA의 경우는 수입국이 상품 및 그 포장에 대해 각각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상대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및 그 포장에 대해 각각 원산지를 확정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FTA에서는 반드시 세칙분류변경기준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상품 원산지의 확정에 대해 소매용 포장재료와 용기가 당해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고 상품이 반드시 지역가치요소기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 당해 상품의 원산지 확정에 있어서 소매용 포장재료와 용기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되어야 한다.

싱가포르 FTA는 일방 당사국이 상품 및 그 포장에 대해 각각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에 대해 단독으로 그 포장의 원산지를 확정할 수 있으며,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포장과 상품을 전체로 보아야 한다.

## 3) 원산지검증 방법

중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의 경우 원산지 검증방식을 살펴보면 간접검증과 직접검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간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는 FTA는 칠레와 ASEAN이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는 증명서류 확인을 위한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간접검증/직접검증(방문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하였다.

한편 조사주체는 칠레와 한국의 FTA에 한해서 수입국세관이 검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협정별 검증제도 및 원산지증명 유효기간 비교

구분	검증 방식	조사 주체
칠레	간접검증	수입국세관
ASEAN	간접검증	-
한국	간접검증/직접검증(방문검증)	수입국세관
파키스탄	증명서류 확인을 위한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Ⅲ. FTA 원산지 규정 분석

#### 1.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검토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체결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협정에서 동일한 국가는 칠레와 ASEAN이 동일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어 한·칠레, 한·ASEAN과 중·칠레, 중·ASEAN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원산지제도와 관련하여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의 원산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중·ASEAN FTA, 중·칠레 FTA의 경우에는 세번변경, 부가가치와 특정공정 등 3가지 세부기준을 두고 운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칠레는 FTA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실질변경기준에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가공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충적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한·ASEAN FTA는 기본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특정가공기준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은 FTA에서 보충기준으로 누적기준과 미소기준을 두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원산지제도의 비교는 중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1위이며, 수출 26.0%, 수입 20.7%를 차지하고 있어 교역상대국으로서 우리 기업에게는 중요 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원산지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수출과 수입 시 원산지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우리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FTA 원산지 완전생산품 기준

완전생산기준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조미진·안경애, 2011).

우리나라와 중국은 기체결 FTA 협정문에서 모두 완전생산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완전생기준은 각 FTA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체로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한·ASEAN의 주요 대상품은 농산물, 광산물, 수산물과 같은 1차산업의 산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FTA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자국선박에 대한 요건으로 자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한해서 취득된 어획물 및 생산물에 한해서만 완전생산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인도, 싱가포르, 미국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중국과 칠레, ASEAN은 완전생산기준을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 중국·칠레는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된 제품 그리고 완전하게 원산지재료만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 및 비원산지 재료로 생산을 하였으나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규정을 하여 적용을 하고 있다(이상모, 2012). 반면 중국·ASEAN의 FTA에서는 완전획득 또는 생산한 제품과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지 않았지만 원산지 부합하는 제품을 완전생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칠레와 ASEAN의 원산지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칠레의 경우가 ASEAN의 경우보다 더 원산지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중국·칠레는 공해상에서 어류와 해산물의 선박의 국적과 관련하여 일방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 하고 있으며, 공해에서 어획한 어류 및 해산물을 가공 또는 제조하여 획득한 제품의 규정적용방식도 일방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2) FTA 원산지 실질적 변형기준

한국은 실질적 변형기준에 있어서 세번변경기준을 우선기준으로 하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선호하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미 FTA에서 일관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우선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부속서에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중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절차기준 및 혼합기준을 적용하여 운용을 하고 있다. 중국·칠레, 중국·ASEAN의 FTA는 실질변형을 판단하는 기준을 부가가치기준을 이용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이 체결한 FTA는 초기와 중기로 보았을 때 ASEAN(2004년), 칠레(2005년)는 초기에 체결된 FTA로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중기부터 뉴질랜드(2008년)와의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운용기준으로 하여 변화를 하였다. 중국은 실질적 변형기준의 주요 기준으로 초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호하였다. 부가가치기준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은 각 FTA 규정마다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다수의 품목에 역내산 40% 기준을 적용하며,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에는 50%의 기준을 활용하거나 세번변경기준과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崔文·尹勝炫, 2011).

〈표 11〉 부가가치기준

구분	역외산기준	역내산기준	산정방법	체결시기
한·칠레	55% 미만 또는 70% 미만	45% 또는 30% 이상	공제법/ 집적법	2004
한·ASEAN	60% 미만	45~55% 이상 (품목별 상이)	공제법/ 집적법	2007
중국·ASEAN	60% 미만	40% 이상	공제법	2004
중·칠레	50% 미만 또는 60% 미만	40% 이상 또는 50%이상	공제법	2005

자료 : 崔文·尹勝炫(2011). “한·중 FTA 협상에서의 주요 산업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중국과 중국학』, 제14권, 저자 재구성.

### 3) FTA 원산지 보충적 판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주요공정기준의 3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3가지의 원산지판정기준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할 때는 보충적 원산지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보충적 판정기준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중립요소, 누적조항, 최소허용기준, 포장조항, 대체가능상품, 불인정공정, 부속품 등, 세트, 직접운송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기 체결된 FTA에서 동일한 ASEAN과 칠레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중립요소, 누적조항, 불인정공정, 부속품 등에 대한 규정을 한국과 중국이 모두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일부규정은 각각 적용하는 것이 있고 규정이 없는 것도 있다. 적용을 하고 있지 않는 규정을 살펴보면 중·ASEAN은 최소허용기준, 대체가능상품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한·ASEAN에서는 포장조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트 물품의 경우 한·ASEAN, 한·칠레, 중·ASEAN에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

〈표 12〉 한국과 중국의 동일국 FTA 원산지 보충적 판정기준

구분	중립요소	누적조항	최소허용기준	포장조항	대체가능상품	불인정공정	부속품등	세트	직접운송
한·ASEAN	적용	적용	적용	-	적용	적용	적용	-	적용
한·칠레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적용
중·ASEAN	적용	적용	-	적용	-	적용	적용	-	적용
중·칠레	적용	적용	8%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자료 : 이상모(2012),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저자 재작성.

#### 4) FTA 원산지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적으로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등은 해당물품의 원산지에 따라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과 같은 송품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이 그 수량과 금액이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이면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그 부속품 등을 모두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칠레, ASEAN의 FTA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RVC,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조미진, 안경애, 2011). ASEAN FTA 협정에서는 품목에 관계없이 부속품 등을 제외하고 본체의 원산지를 결정을 가장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칠레의 FTA 협정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비원산지 부속품 등의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각각의 원산지별로 재료비에 계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칠레의 FTA에서 해당상품과 인도된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는 원산지 판정시의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다만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조건은 송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않을 것과 양과 가치가 당해 상품에 대한 통상적 수준일 것을 요구 하고 있다. ASEAN FTA의 경우 상품과 함께 검사를 신청한 부품, 비품, 도구가 지도적 및 소개 설명 자료는 수입국이 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관세를 징수 하게 되면 당해 상품의 원산지를 확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것을 규정 하고 있다.

#### 5) FTA 원산지 소매용 포장 용기

원산지결정에 대한 보충적 기준으로 소매판매물을 위한 포장용품·포장용구는 그 내용물의 원산지를 따르지만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물을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때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정재우·이길남,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 ASEAN FTA 협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소매용 포장·용기의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



하고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용기의 원산지별로 각각 계상을 하게 되며, 중국과의 FTA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칠레와 ASEAN의 FTA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원산지 규정을 통해 2단위, 4단위의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소매 판매용 물품의 포장 재료와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조건으로 원산지를 당해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다만 그 포장용 재료와 용기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는 그 자체의 가치가 고려되고 있다(조엽하, 2009). ASEAN FTA의 경우는 수입국이 상품 및 그 포장에 대해 각각 관세를 징수하는 할 때 상대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및 그 포장에 대해 각각 원산지를 확정할 수 있다.

## 6) FTA 원산지검증 방법

원산지의 검증(Verification)은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와의 FTA에서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계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에 대하여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한다. 반면 ASEAN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게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계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칠레와 ASEAN 모두 우리와는 다르게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적용을 하고 있다.

## IV. 결론 및 시사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FTA 체결을 통해 교역시장의 확대와 보다 나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체결 건수가 14건이며, 중국의 경우도 우리와 같은 14건으로 FTA를 체결 하여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규정은 대외무역법, 관세법을 비롯하여 각 국가별 FTA 협정 등에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원산지 제도의 시행과 원산지 제도의 시행이 어려워지고 있다(유광현·방성철, 2015). 또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수출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시 각국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원산지 비교는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

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중국이 동시에 체결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원산지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FTA 원산지 완전생산품 기준, FTA 원산지 실질적 변형기준, FTA 원산지 보충적 판정기준, FTA 원산지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FTA 원산지 소매용 포장 용기, FTA 원산지검증 방법에 대하여 우리와 중국이 동시체결을 하고 있는 칠레와 ASEAN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원산지제도와 관련하여 여타 FTA와 동일하게 비특혜원산지규정 및 특혜원산지규정을 하고 있다. 한·칠레, 한·ASEAN, 중국·ASEAN, 중국·칠레 FTA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실질변형기준에 세 번변형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가공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충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완전생산품 기준의 경우 한·칠레, 한·ASEAN FTA는 유사한 수준이나 중국·ASEAN, 중국·칠레 FTA의 원산지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칠레의 경우가 ASEAN의 경우보다 더 원산지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 번변형기준을 우선기준으로 하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선호하는 편이며, 중국은 칠레, ASEAN의 FTA는 실질변형을 판단하는 기준을 부가가치기준을 이용하여 적용을 하고 있다. 보충적 판정기준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기체결된 FTA에서 동일한 ASEAN과 칠레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중립요소, 누적조항, 불인정공정, 부속품등에 대한 규정을 한국과 중국이 모두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일부규정은 각각 적용하는 것이 있고 규정이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의 경우 우리나라는 칠레, ASEAN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칠레와 ASEAN FTA에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

소매용 포장 용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 ASEAN FTA 협정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칠레와의 FTA 그리고 ASEAN의 FTA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

원산지의 검증방식도 중국의 경우 칠레와 ASEAN 모두 우리와는 다르게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적용을 하고 있다. 양국간의 동일국가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양국모두 FTA초기에 체결한 FTA라는 점에서 신중하면서도 완전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당시 체결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한·중 FTA는 기 체결된 FTA보다 개방수준이 매우 낮다. 이미 기 체결되어 있는 한·ASEAN의 FTA에와 비교적 양허수준이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원산지제도에 대한 이해는 중국을 최대 무역교역국으로 하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관련제도를 잘 파악하여, 수출과 중국시장진출 후 다시 계약국을 대상으로 교역을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문제로 인하여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馬 光(2008), 「중국의 원산지 법제도에 관한 연구」, 세계법제연구보고서. pp.1-58.
- 무역연구소(2005), 「원산지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pp.1-71.
- 세법연구센터(2012), 「무역 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 통관규정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1-181.
- 세법연구센터(2014),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1-152.
- 유광현·방성철(2015), “국내 원산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pp.103-123.
- 이상모(2012),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한국법제연구원, pp.1-107.
- 이찬우·오동윤(2013),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중국 원산지 규정연구”, 「중국학 연구회」, 제63권, pp.125-152.
- 정재우·이길남(2011),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3호, pp.143-166.
- 조미진·안경애(201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제36권 제3호, pp.83-105.
- 조염하(2009),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중·칠레 FTA, 한·칠레 FTA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p.1-99.
- 崔文·尹勝炫(2011). “한·중 FTA 협상에서의 주요 산업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중국과 중국학」, 제14권, pp.29-64.
- 산업통상부(2014),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pp.1-106.
- 관세청 FTA 포털, 각 FTA 협정문, [yesfta.customs.go.kr](http://yesfta.customs.go.kr)
- FTA 강국 KOREA, [www.fta.go.kr](http://www.fta.go.kr)

## A Comparative Study on Rules of Origin of FTA signed by Korea and China

Hyoung-Cheol Kim

Hee-Cheol Kim

Kong-Woo La

---

• Abstract •

In this study, we analyze South Korea and China have already concluded FTA rules of origin. By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country of origin of signed FTA, we obtained the necessary implications of origin on the FTA negotiations that will be concluded in the future.

FTA between Korea and China's opening level is much lower than the already concluded FTA's, and Korea and the ASEAN FTA has already been signed with similar concessions. However, in understanding the rules of origin in China, it is important for us that China is the first trading partner of the trade. Korean companies are well aware of the rules of origin in China, and it should be noted to prevent damage caused due to the rules of origin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rade with the Contracting Parties.

---

〈Key Words〉 FTA, Rules of Origin, Korea and China FTA